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942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묵, 공익법무관 구형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

담당변호사 양진모

변 론 종 결 2021. 6. 9.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29.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가.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29. 접수 제50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년경 C 등을 상대로 수목 벌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8. 8. 9. C 등에게 71,166,38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, 이후 C 등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나. C은 2019. 4. 29.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/2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을 증여하고,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다.

다. C은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, 위 판결금 채무 외에 약 3,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지분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,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지분 증여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C의 사해의사도 추인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보험료라도 부담함으로써 C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과 을 1,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 증여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책임 재산 부족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대권

별지

목록(자동차의 표시)
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중형 승용	③ 용 도	자가용
④ 차 명	렉스턴	⑤ 형식 및 년식	R7DF20A4-01E	2015	
⑥ 차 대 번 호		⑦ 원동기형식	671960		
⑧ 사 용 본 거 지	경기도 시흥시				

